한국소비자원
Korea Consumer Agenc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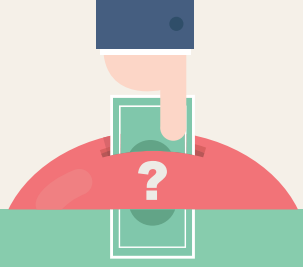

대학생 여러분, 소비자피해 이렇게 해결하세요!

피해예방체크리스트

방문판매

-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"100%자격증 취득, 특별할인, 무료" 등을 언급하며 충동구매 유도
- 학교·교수추천, 장학혜택을 사칭하여 교재구입이나 강의등록을 권유
- 포장 훼손, 고의로 청약철회기간을 지연시켜 교묘히 환불 방해

"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어"

계약은 신중하게,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하고 판매자 정보를 알아두세요.
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
14일 내 청약철회(환불)가 가능합니다.

불법방문판매업자로 의심되면 사업자정보를 확인하세요. 공정거래위원회 www.ftc.go.kr

다단계판매

-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·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들을 유인
- 합숙소, 찜질방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
-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·대출 강요
-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교묘히 환불 방해

"세상에 공짜는 없다! 단기간 고수익 일자리는 의심해봐야"

불법으로 의심되면 가입을 거부하세요.
상품을 구입했는데 환불을 하고 싶다면 사용하거나 훼손하지마세요.

불법다단계업체인지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. 공정거래위원회 www.ftc.go.kr

꿀 TIP!

청약철회기간

방문판매·다단계판매는 계약일 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14일, 전자상거래·할부거래는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내용증명우편

청약철회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우체국이 보증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※ 부모동의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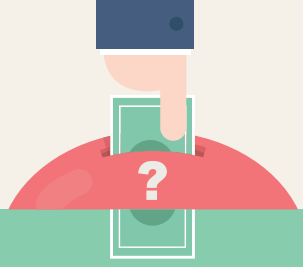

사례1 방문판매원의 성명 등 정보 미제공

Q 한 남자가 강의실에서 학습교재를 홍보하는 거예요. 방문판매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학교 관계자로 생각했는데, 설명이 끝난 후 작성한 신청서를 보니 **방문판매원의 성명,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.**

A 방문판매원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!

방문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밝혀야 합니다. 또, 방문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, **방문판매업자의 성명, 상호, 주소, 전화번호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.**

사례2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

Q 캠퍼스에서 판매원이 인터넷강의를 신청하면 교재를 무료 제공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. 다음날 저에게는 불필요한 강의인 것 같아서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, 교재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.

A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!

단순 포장 훼손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. 다만 제공받은 제품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으니 **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**

사례3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유인

Q 다단계 회사 팀장이 많은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면서 저에게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입하라고 권유합니다.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.

A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에 가입해서는 안됩니다!

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에 가입하고 무리하게 투자(사재기 등) 할 경우, **고수익은커녕 투자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.**